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102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림

담당변호사 김도형, 이재림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20. 2.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같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 2. 7. 접수 제89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0. 2. 6. 접수 제1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C가 D(이하 소외 D)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토대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순 번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대출일	대출금
1	2014. 4. 4.	17,100,000원	3년	2014. 4. 4.	19,000,000원
2	2014. 8. 27.	25,500,000원	3년	2017. 10. 26.	200,000,000원

위 신용보증약정체결시 C는 원고에게 소외 D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그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될 때에는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연체되었고, 원고는 2018. 3. 29. 소외 D에게 1차 대출원리금 18,109,418원(= 원금 17,100,000 + 이자 1,009,418)과 2차 대출원리금 27,041,622원(= 원금

25,500,000 + 이자 1,541,622)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차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비용 420,78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062호로 'C는 원고에게 46,106,444원과 그중 구상금 45,571,82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8. 5. 2.경 확정되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아버지 E은 1998. 5. 3.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C, 피고 및 F, G, H, I, J은 2020. 2. 4. 망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7.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사해행위 취소

(1)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C의 특별수익] C는 망인으로부터 1991년 초봄경 심비디움 인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1995년 2월경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망인이 K리 토지 등을 매각한 돈으로 대신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위 돈을 증여받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위 증여받은 돈의 가치는 300,000,000원이 넘어서 C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다.

○ [피고의 기여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649,307,800원의 절반인 324,653,900원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의 기여분을 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즉 나머지 325,000,000원은 상속인들 간에 특별수익 등을 감안하여 분배하되 피고가 그 현금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갖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되었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먼저 특별수익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1995. 2. 18. A단체에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망인은 1997. 3. 27. L에게 M, N 토지에 관하여 199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은 위 K리 토지 매각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인 2001. 1. 27.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C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¹⁾).

또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함에 따른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2. 25. C에 대한 구상금 553,621,384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C는 구상금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채권의 만족을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 이 사건 분할협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거나 공동담보 초래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7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부동산의 표시

1. 아산시 O 대 1051㎡

2. 아산시 O 지상

[도로명주소]

아산시 P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스라브, 스테이지붕

지1층, 지하실(저장고), 창고

지1층 66.12㎡

지1층 165.29㎡

3. 아산시 Q 대 46㎡

4. 충북 진천군 R 전 1051㎡

5. 충북 진천군 S 전 1445㎡ -끝-

1)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여금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으로, 위 대법원의 사안과는 다르다.